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0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노후화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 대상을 개정함

(안 제6조)

나.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신설함(안 제10조)

라. 오타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아동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책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제1항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명”을 “1명”으로 한다.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제3항 중 “인정한”을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기관·민간단체”를 “관계 기관·민간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책임)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2. 지역 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	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8.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의 지원) -----

-----.

1. ~ 6. (현행과 같음)

7. 센터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

-----.

1. 센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 7. (생략)

④·⑤ (생략)

제11조(회의 등) ① ~ ④ (생략)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 및 심사

4. 센터 사업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

----- 선출한다.

③ -----

-----.

-----.

1. -----
-- 1명

2. ~ 7.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u>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관계기관·민간단체</u>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같음) ③ ----- ----- <u>인정하</u>-----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관계</u> <u>기관·민간단체</u>----- ----- -----. 제12조(위원의 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	--